

중 국

[월간 보고서] 2025년 광둥성 저작권 사법보호 현황 분석

2025년 광둥성 저작권 사법보호에서는 고의·중대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등에 대한 형사책임 등 엄격한 권리보호가 주요 내용으로 나타남.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필요한 조치는 콘텐츠 제공구조, 플랫폼의 실질적 관여 정도, 침해 인식 및 기술적 통제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음. 또한 AI 생성 콘텐츠 등 신기술 분쟁에 대한 사법적 대응 및 조정·이용허락을 통해 침해관계를 합법적 이용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해결방식도 확인됨.

1. 현황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026년 4월 23일 <광동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 백서(2025년도) (广东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白皮书(2025年度))> (이하 "<광동 백서>"라 함)를 공개하였음. <광동 백서>는 2025년 광둥성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 실적과 주요 사법정책 및 전형사례를 정리한 공식 사법백서임. 같은 시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광동법원 2025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 사건(广东法院2025年知识产权司法保护十大案件)> (이하 "<광동법원 10대 사건>"이라 함)을 발표하였고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2025년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및 전형사례(广州知识产权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及典型案例(2025年))> (이하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이라 함)를 공개하였음. 본 보고서는 <광동 백서>를 주된 기초자료로 하여 2025년 광둥성 저작권 사법보호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검토하는 가운데 <광동법원 10대 사건>과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를 통하여 관련 대표 저작권 사례를 함께 살펴봄.

2025년 광둥성 법원이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민사 제1심 사건은 11만 2,82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저작권 사건은 6만 2,821건으로 55.68%를 차지하였음. 같은 해 광둥성 법원이 종결한 저작권 사건은 약 6만 2,300건이었음. 형사 제1심 신규 사건 가운데 저작권 침해죄 사건은 50건, 침해복제물 판매죄 사건은 7건으로 집계됨. 한편 <광동 백서>는 신유형 분쟁 대응 현황으로 광저우인터넷법원이 2025년 AI 생성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712건을 종결하고, 저작권 주무기관에 AI 생성물의 명확한 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건의 6건을 발송한 사실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구분	2025년 현황	비고
저작권 민사 제1심 신규 접수	62,821건	민사 제1심 신규 사건의 55.68%
저작권 사건 종결	약 62,300건	광동성 법원 전체
저작권 침해죄 신규 접수	50건	형사 제1심
침해복제물 판매죄 신규 접수	7건	형사 제1심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분쟁 종결	712건	광저우인터넷법원

※ 출처: <광동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 백서(2025년도)>

2. 주요 내용

(1) 저작권 재판 규모와 문화·디지털 콘텐츠 보호

<광동 백서>는 2025년 광동성 법원이 약 6만 2,300건의 저작권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밝히면서 문화예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 사법보호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음. 전통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한어대사전> 저작권 침해분쟁을 주요 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또한 '김용 대 강남' 재심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전면적인 화해를 성사시켜 동인작품 창작에 합리적인 법적 공간을 남긴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신유형 온라인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스크립트킬 플랫폼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트토이' 표절분쟁에서는 랜덤 박스 완구류 제품의 주요 디자인 특징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2) 디지털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광동 백서>는 엄격한 저작권 사법보호의 사례로 대형 숏폼 플랫폼 저작권 사건을 소개하면서 비독점 이용허락료를 기준으로 배상기초액을 산정하여 6,000만 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고 플랫폼의 규범적 운영을 촉진한 사례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광동법원 10대 사건> 사례 5에서는 권리자의 사전 경고와 반복적인 유효 통지 이후에도 대규모 침해가 계속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 등을 토대로 플랫폼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고 방조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고의와 침해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3)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기술적 보호조치

<광동 백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광동 법원이 심리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사건이 최고인민법원의 과학기술혁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관련 지도성 사례로 선정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음. 한편 <광동법원 10대 사건>에서는 사례 10을 저작권 형사보호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고의적 우회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음.

(4) AI 생성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

<광동 백서>는 신유형 분쟁 대응 현황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광저우인터넷법원이 AI 생성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712건을 종결하고, 저작권 주무기관에 AI 생성물의 명확한 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건의 6건을 발송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으며 백서는 이러한 조치가 인공지능 분급·분류 감독체계의 정비를 지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5) 저작권 분쟁의 조정 및 절차적 대응

<광동 백서>는 포산 찬청구 법원(佛山禅城法院)과 저작권 당국이 '통합창구형'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IP 저작권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또한 <광동법원 10대 사건> 사례 5에서는 숏폼 플랫폼 사건의 판결 확정 후 법원이 후속조정을 추진하여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이 전국 범위에서 일괄 화해와 상업협력에 이른 사실을 소개하고 있음.

저작권 소송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산 법원(中山法院)이 문화미디어회사의 작품 상영권 침해분쟁 시리즈 사건에서 원고의 허위진술과 사법절차 방해행위에 대하여 사법 제재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백서는 이를 통해 민사소송 방해행위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강조하고 있음.

3. 주요 저작권 사례

다음에서는 <광동법원 10대 사건>과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에 수록된 사례 가운데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사례를 각각 2건씩 선별하여 살펴봄. <광동법원 10대 사건>은 광동성 각급 법원의 연간 대표사건 10건을 선정한 자료로서 상표, 부정경쟁, 데이터, 직무발명, 저작권, 행위보전 및 형사보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쟁점을 포괄하고 있음.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에는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이 선정한 11건의 전형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데이터 보호, 플랫폼 책임, 저작권·상표·특허 보호, 기술적 사실확인 및 조정 등 전문 지식재산권 재판의 다양한 쟁점과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광동법원 10대 사건>의 저작권 관련 사례 5·10과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의 전형사례 4·7을 대상으로 함.

(1) <광동법원 10대 사건> 중 저작권 사례

1) 숏폼 플랫폼의 방조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 (2024)粵民终5088号

① 기본 사실관계

원고 A 회사 등은 유명 예능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A 회사 등은 대형 숏폼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고 B 회사에 여러 차례 사전경고를 보내 침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음. 해당 프로그램의 첫 방송 이후 B 회사의 공식 인증계정과 다수 이용자가 침해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였고, 권리자가 침해대상과 저작권 보유 사실을 특정한 유효한 통지를 반복한 뒤에도 침해 영상은 계속 증가하였음.

제1심 변론 전까지 확인된 침해 영상은 2만 건을 넘었고, 관련 화제의 누적 재생량은 21억 회

를 초과하였음. 침해 영상 모음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영상의 삭제율은 오히려 크게 낮아졌음. 원고는 침해정지와 필터링·차단 등 효과적인 조치의 실시 및 6,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② 법원의 판단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항상 동일하게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특히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하고 높은 기술적 심사·관리능력을 갖춘 플랫폼에서는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삭제·차단에 그치지 않고, 침해 영상에 대한 기술적 차단·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음.

법원은 권리자의 반복적인 통지 이후에도 침해 규모가 계속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하여, B회사의 방조침해를 인정하고 고의 및 침해행위의 중대성이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작품 제작비의 절반을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의 비독점 이용허락료로 삼아 인기 방영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이용허락료를 추산한 뒤 실제 침해기간을 반영하여 3,094만 8,000위안을 배상기초액으로 산정하였음. 여기에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을 적용한 금액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6,000만 위안 전액을 인정하였음.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이용자가 직접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플랫폼의 방조침해에서도 고의와 침해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또한 플랫폼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침해 상황과 반복 정도, 플랫폼의 규모 및 기술적 통제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2) 무인기 측량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 불법 우회 - (2025)粤0305刑初173号·174号

① 기본 사실관계

저작권자 A 회사는 해당 무인기 측량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1기기 1코드 방식의 인증, 1회 이미지 처리수량 제한, 오프라인 이용횟수 및 이용기간 제한 등을 설정하였음.

피고인 B 씨와 C 씨는 2022년 말부터 영리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용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크랙 플러그인을 외부 개발자에게 제작하게 하거나 직접 취득한 뒤 판매하였음. 해당 플러그인은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 변경, 시스템 시간 변조, 백업 레지스트리 정보 불러오기 등의 방법으로 제한을 우회하여 사실상 무제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법감정에서도 실제 우회 기능이 확인되었음. 두 피고인의 위법소득은 각각 6만 위안을 초과하였음.

② 법원의 판단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은 A 회사가 설정한 이용제한이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의 저작물 접근과 소프트웨어 실행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그 보호 목적이 적법하며 보호

방식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형법상 의미의 '접근통제 기술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두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의로 우회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범죄 정황도 중대하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C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을 병과하였음.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의 기기인증, 이용횟수 및 이용기간 제한 등이 무단 접근과 소프트웨어 실행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그 보호 목적과 방식이 적법·합리적인 경우 형법상 접근통제 기술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조치를 영리목적으로 고의 우회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임.

(2)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 중 저작권 사례

1) 온라인 스크립트킬 플랫폼의 직접침해 책임 - (2025)粵73民终71号

① 기본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온라인 스크립트킬에 사용되는 극본 형태의 문자저작물 <불희(不喜)>를 창작하여 필명으로 발표하였고, 해당 작품은 도시별 오프라인 한정 이용허락 방식으로 유통되는 등 업계에서 일정한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 피고 B 씨는 위챗 공식계정 형태의 온라인 스크립트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참가자 모집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B 씨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부에서는 모집한 전담 인력을 통해 정품 스크립트킬용 극본을 스캔하고, 분할·교정·편집한 뒤 지정된 시스템 백엔드에 업로드하여 자체 극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유료회원에게 무제한 극본 열람과 온라인 진행 등의 권한을 제공하였음. 또한 플랫폼이 인증한 진행자(DM)가 위챗 그룹, 음성채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침해 극본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었음.

②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 씨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 극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보아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인정하고 경제적 손해 3만 위안과 합리적 권리보호비용 7,500위안의 배상을 명하였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음.

2심 법원은 해당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저장공간 또는 중립적인 참가자 연결 도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모집한 전담 인력을 통해 정품 스크립트킬 극본을 스캔·분할·교정·편집하여 시스템 백엔드에 업로드하고, 자체 극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유료회원에게 극본 열람·온라인 진행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크립트킬 극본의 제공과 서비스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온라인 스크립트킬 업계에서는 통상 플랫폼이 극본을 제공하고 진행자는 게임 진행과 안내를 담당한다는 점, B 씨가 침해 극본이 해당 진행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해당 진행자가 플랫폼 인증 진행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진행자의 극본 제공행위를 플랫폼 서비스의 연장 및 구성 부분으로 보았음.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 극본이 해당 플랫폼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플랫폼이 사건 극본에 관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행위를 직접 실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온라인 스크립트킬이라는 신유형 문화서비스에서 플랫폼, 진행자, 이용자 사이의 책임경계를 구체화한 사례임. 특히 침해대상이 스크립트킬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스크립트킬에 사용되는 극본 형태의 문자저작물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이 단순한 참가자 연결도구임을 주장하더라도 극본의 스캔·복제·전파와 회원서비스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극본에 대한 플랫폼 자신의 직접침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공식 전형사례 역시 이 사건에서 '플랫폼-진행자-이용자'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책임경계를 명확히 한 점을 주요 의의로 제시하고 있음.

2) <한어대사전> 저작권 침해분쟁의 이용허락 전환 - (2025)粤73民初5078号

① 기본 사실관계

원고 A 출판사는 적법한 수권을 통해 <한어대사전(汉语大词典)>과 <사해(辞海)> 등 사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권리행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 B회사는 자사가 생산·판매하는 X 학습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에서 <한어대사전>의 어휘의 뜻풀이, 용례 및 뜻풀이 배열 등 주요 내용을 대량 이용하였고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으나, 원저작물의 기본 표현과 핵심 내용은 유지하였음.

A 출판사는 B 회사의 행위가 <한어대사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와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권리보호비용 합계 1,024만여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였음.

② 조정 경과 및 결과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저작권 귀속이 명확하고 수권관계가 완전하며 침해사실도 명확한 한편 A 출판사가 <한어대사전>, <사해> 등 양질의 저작권 자원을 보유하고 B 회사가 성숙한 교육용 스마트 하드웨어 연구개발 및 판매체계와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양측의 자원이 상호보완적이고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법원은 법률 설명과 유사 판례의 제시를 통해 B 회사에 침해의 성격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양측이 침해사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 뒤 "분쟁을 협력으로, 침해를 이용허락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조정을 추진하였음.

당사자들은 정식 재판 전에 화해하여 5년간 1,000만 위안 규모의 저작권 이용허락 및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B 회사가 X 학습기에서 <한어대사전> 콘텐츠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후 이용허락 대상은 <사해>까지 확대되었으며, 정품 콘텐츠를 탑재한 학습기 수량도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증가하는 등 저작권 침해분쟁이 장기적인 콘텐츠 이용허락 및 사업협

력 관계로 전환되었음.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디지털 교육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혁신을 함께 고려하면서 조정을 통해 침해대립을 이용허락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한 사례임. 공식 사례는 양측의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분쟁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소송 및 경영비용을 낮추고, 저작권의 권리보호와 가치 실현을 결합한 점에 의의를 두고 있음.

4. 분석

(1) 고의·중대한 침해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와 소송질서 확보의 병행

<광동 백서>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 광동성 저작권 사법보호에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동시에 저작권 소송의 신뢰성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대응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민사적으로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저작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엄격한 책임부과가 확인됨. 예를 들어 대형 숏폼 플랫폼 사건에서 반복적인 통지 이후에도 대규모 침해가 지속되고, 고의 및 침해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된 사정을 토대로 6,000만 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음. 형사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기술조치를 영리목적으로 우회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저작권 소송에서는 원고의 허위진술과 사법절차 방해행위에 대하여 사법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도 제시됨.

이러한 내용은 엄격한 보호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 한정되지 않고, 고의·중대한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형사책임, 소송절차의 신뢰성 확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만 이러한 법적 대응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와 침해행위의 중대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목적과 기능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콘텐츠 제공구조·실질적 관여 및 침해 인식에 따른 플랫폼 책임의 성립

<광동 백서>와 관련 사례자료의 플랫폼 저작권 사건을 종합하면 플랫폼 책임은 플랫폼이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기보다 침해 콘텐츠의 제공구조, 플랫폼의 침해 인식 정도 및 기술적 통제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음. 숏폼 플랫폼 사건에서는 다수 이용자가 침해영상을 업로드한 가운데 권리자의 반복적인 유효 통지 이후에도 대규모 재유통이 계속된 점과 플랫폼의 기술적 관리능력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차단·탐지 조치와 방조침해 책임이 문제되었음. 반면 광저우 온라인 스크립트킬 플랫폼의 극본 사건에서는 플랫폼이 자체 극본 데이터베이스와 유료회원용 열람·진행 기능을 운영하고, 침해 극본의 제공과 서비스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플랫폼 자신의 직접침해 책임이 인정되었음.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플랫폼에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플랫폼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광저우법원 현황 및 사례>는 플랫폼의 필터링·차단 의무 이행을 위한 '동적 협력형'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권리와자과 솟품 플랫폼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있음. 또한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의 사건((2022)粵民再59号)에서 법원은 플랫폼이 구체적인 침해 공유행위를 인식한 이후 해당 공유링크만 차단하는 것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침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으므로, 침해 공유링크가 가리키는 파일의 공유 기능까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법원은 파일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 개인적 학습, 연구, 감상 등 비침해적인 목적으로 해당 파일을 저장한 이용자의 적법한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일 삭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음. 또한 이 사건에서는 파일의 공유 기능을 차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 재생, 즉시 업로드, 오프라인 다운로드까지 모두 제한하는 전면적 차단도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플랫폼 책임의 성립과 유형은 콘텐츠 제공구조, 플랫폼의 실질적 관여 정도 및 침해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플랫폼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반복침해의 가능성, 기술적 통제 가능성과 함께 권리자·플랫폼·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신기술 저작권 분쟁에서 분쟁유형에 따른 사법적 대응방식의 분화

<광동 백서>의 신기술 관련 저작권 내용을 종합하면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하나의 방식으로 수렴되기보다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 AI 생성 콘텐츠 분야에서는 광저우인터넷법원이 관련 저작권 분쟁 712건을 종결하고, 저작권 주무기관에 AI 생성물의 명확한 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건의 6건을 발송하였음. <광동 백서>는 이를 인공지능 분급·분류 감독체계의 정비를 지원하는 조치로 설명하고 있음.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고의적 우회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제시되는 등 형사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문제되고 있음.

특히 소프트웨어에 설정된 기술적 조치의 우회가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는지는 단순히 기술적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무단 접근이나 소프트웨어 실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 그 보호 목적과 방식이 적법·합리적인지 등을 토대로 판단되고 있음. <광동법원 10대 사건> 사례 10에서는 1기기 1코드 방식의 인증과 이용횟수·이용기간 제한 등이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의 저작물 접근과 소프트웨어 실행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그 보호 목적과 방식도 적법·합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법상 접근통제 기술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를 영리목적으로 고의 우회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죄가 인정되었음.

반면 본 보고서에서 함께 검토한 사례((2023)粵03刑终422号)에서는 POS 단말기의 서명인증이 특정 결제기관 프로그램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기능적 장치일 뿐 저작권 보호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서명인증의 파괴 자체를 기술적 보호조치 파괴 방식의 저작권 침해죄로 평가

하지 않았음.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체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죄 성립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며, 항소심이 정정한 것은 해당 서명인증 파괴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파괴로 평가한 부분임. 위 무인기 측량 소프트웨어 사건과 이 사건((2023)粵03刑終422号)을 비교하면 형사법상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인지 여부는 기술적 제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보호 목적, 실제 접근·실행 통제기능 및 보호 방식의 적법성·합리성 등 구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신기술 저작권 분쟁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와 같이 사건처리와 사법견의를 통해 관련 규제체계의 정비를 지원하는 대응이 나타나는 한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형사보호가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인 법적 요건에 따라 확정하는 대응이 나타나는 등 기술 및 분쟁의 성격에 따라 사법적 대응방식이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엄격한 권리보호와 조정·이용허락을 통한 협력 전환

<광동 백서>와 관련 사례자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 엄격한 권리보호 사례와 함께 포산시 찬청구(佛山市禅城区) 인민법원과 저작권 당국이 운영한 통합창구형 저작권 조정과 <한어대사전> 분쟁의 이용허락·협력 전환 등 조정을 통한 해결사례도 확인됨. 슛품 플랫폼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통지 이후에도 대규모 침해가 지속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와 침해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한편 <한어대사전> 사건에서는 법원의 일차적 심사를 통해 저작권 귀속과 수권관계 및 침해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에서 양측의 저작권 자원과 디지털 교육사업 역량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5년간의 저작권 이용허락 및 협력계약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전환되었음.

또한 슛품 플랫폼 사건((2024)粵民終5088号)에서도 판결 확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정을 통해 전국 범위의 일괄 화해와 상업협력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부과와 조정·이용허락이 상호 배타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사안에 따라 연계되거나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줌. 다시 말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침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확인되는 한편 <한어대사전> 사례처럼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당사자 사이의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침해관계를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과 사업협력 관계로 전환한 사례가 존재함.

5. 시사점

2025년 <광동 백서>의 저작권 관련 내용과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사례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광동성 저작권 사법보호에서는 고의·중대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형사책임 등 엄격한 권리보호와 소송질서 훼손에 대한 절차적 대응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한편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필요한 조치는 콘텐츠 제공구조, 침해에 대한 인식, 반복침해 가능성, 기술적 통제가능성 및 권리자·플랫폼·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이는 플랫폼이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실제 콘텐츠 제공과 관리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침해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책임의 성립·유형과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AI 생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이 확인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에 설정된 기술적 조치가 형법상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작권 보호 목적과 실제 접근·실행 통제기능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전제로 판단되고 있음.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대응뿐 아니라 조정과 이용허락을 통해 침해관계를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해결방식도 함께 확인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자료에서는 엄격한 권리보호, 플랫폼 책임과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신기술 관련 분쟁 대응 및 조정형 분쟁해결이 2025년 광동성 저작권 사법보호를 이해하는 주요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粤73民终71号

(2022)粤民再59号

(2023)粤03刑终422号

广东高院发布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白皮书, 广东法院网, 2026年6月5日

- https://www.gdcourts.gov.cn/xwzx/gdxwfb/content/post_1843710.html

广东法院2025年知识产权司法保护十大案件, 广东法院网, 2026年4月24日

- https://www.gdcourts.gov.cn/gsxx/quanweifabu/anlihuicui/content/post_1843713.html

广州知识产权法院发布2025年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白皮书及年度典型案例, 广州知识产权法院, 2026年4月22日

- <https://mp.weixin.qq.com/s/AkH7q098WCAOZLmAclfGmA>

广州知识产权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及典型案例(2025年)pdf, 广州知识产权法院, 2026年4月

广东高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白皮书(2025年度)pdf, 广东省高级人民法院, 2026年4月